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

# 제 안 설 명 서

2023.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청렴감사실]

# 제안 설명서

보고자: 청렴감사실장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고충민원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2년도 운영상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합리적인 처리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구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해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 1. 10. 최초로 위촉하여 현재 청렴감사실 내 독립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직무는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조정·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지난해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운영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건>

계	건축	복지	보건	경제	주차	기후	도시
16	7	3	2	1	1	1	1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2년도 운영상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의 규정에 의해 달서구 의회에 운영상황을 보고 후 3월 중으로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의안 번호	00923이1
----------	---------

제출일자: 2023. 1. 20.

제출자: 달서구청장  
(청렴감사실장)

##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 하고 있는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2년도 운영상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함.

## 2. 주요내용

### 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 다.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3. 2022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 3. 향후 추진일정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공표: 2023. 3월중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제1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1
-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3

## 제2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3

## 제3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4
-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5
- 3. 2022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6
-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12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처리·의견표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제 1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 위원회 구성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에 따라 고충민원의 합리적인 처리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등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준용)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나.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 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다. 위원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라.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 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2023. 1월 현재)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자격요건 및 주요이력	근무일
위원장	권기일	2022. 1. 10. ~ 2024. 1. 9. (2년)	5급이상 공무원 (경상북도 사무관 퇴직)	수, 목, 금
위 원	정진국		시민사회단체 추천 (매일신문사 국장 역임)	월, 화, 수

나. 위촉일자: 2022. 1. 10.

다. 근무장소: 청림감사실내(독립공간, 3평정도)

라. 운영방법: 주3일 근무(매주 수요일은 2인 합동근무)

마. 202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활동수당: 편성 46,800/집행 44,550천원
- 운영경비: 편성 1,200/집행 1,200천원
- 집행잔액: 2,250천원 반납

바. 2023년도 예산편성 현황: 48,000천원(활동수당 4,680, 운영경비 1,200)

## 제 2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및 의무

#### 가.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평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조정·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나. 직무 제외사항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신청이 된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

1. 구의회에 관한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다. 비밀유지의 의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라. 회의운영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사항,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한다.

# 제 3 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 1.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 가.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할 수 있다.

### 나. 고충민원의 조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하여 질문 및 현황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이첩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아니 할 수 있다.

#### 다. 의견표명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와 조사가 완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가.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건>

계	건축	복지	보건	경제	주차	기후	도시
16	7	3	2	1	1	1	1

※ 건축민원중 3건 및 복지민원중 1건은 동일인으로 수시로 부서를 방문하여 각종 민원제기

### 나. 처리유형별 고충민원 현황

- 권고(8건), 의견표명(5건), 시정(3건)

### 3. 2022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	2022. 2. 9.	보 조 사 업 완료 후, 자 부담 집행 잔액 반납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원 운영자가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잔액 반납 시 보조금부터 먼저 잔액 집행 후 자부담 집행 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이에 대해 구청에서 자부담 잔액까지 포함하여 환수하는 것은 부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부분은 전액지출 처리하고, 자부담은 남겨두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li> <li>○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시에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그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함을 안내 【의견표명】</li> </ul>	여성가족과
2	2022. 2. 9.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피 해 보 상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구청,시청 등에 반복민원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민원은 원칙적으로 금전이 개입된 민법상 사인간의 관계(건설사, 민원인)이므로 구청에서는 당사자간 중재를 권유하고,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 안내 【의견표명】</li> </ul>	건축과
3	2022. 2.11.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업무 처리 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처리 및 규약개정 등 업무처리 부적절</li> <li>○ 이에 대해 구청에 민원 제기시 업무담당자의 민원 대응 불친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에서는 법규에서 정한대로 해당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관리감독 철저 당부</li> <li>○ 특히,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토록 권고 【권 고】</li> </ul>	건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4	2022. 2.11.	불우어르신 생계지원 요청	○ 민원인은 84세의 고령이며 청각장애 노인으로 특별한 생계 수입이 없으므로 구청에 생계지원 요청	○ 해당 주민센터 및 수차례 현지방문을 통해 민원인 소유의 노후 2층 주택 및 일정액의 금융자산(예금)이 있음을 확인함.  민원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자 선정이 불가함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함  ○ 또한, 관계부서에 민원인의 능력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  【권 고】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일자리지원과
5	2022. 4.11.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요청	○ 민원인이 임차하여 영업중인 상가 건물중 일부가 무허가 건축물로 구청에 적발되어 철거 명령을 받음  ○ 이에 민원인은 임차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영업할 생각이었으나 이행강제금이 과다하므로 현재처럼 계속 50% 경감을 요청	○ 민원인의 요청사항은 「건축법」 및 「달서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지침」에 의거 철거독촉 기간에는 이행강제금이 50%경감되나, 그 이후에는 가중 고지됨을 통지함.  ○ 다만 구청에서는 같은 자침에 의거 경감이 안되면 12개월 분할 납부토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권고  【권 고】	건축과
6	2022. 4.27.	전통시장내 노외주차장 일부 폐지요청	○ 2020년 ◇◇시장 현대화 사업 시 상인회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19면 가운데 영업에 방해되는 다수 민원인의 상가 바로 앞 9개 주차면 제거요청	○ ◇◇시장의 민원인 상가 및 상인회를 수차례 현지 방문 조사하고 구청 관계부서와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상호 타협을 통해 현재 상가 앞 9면의 직각 주차선을 5면 일렬주차 방식으로 재설치토록 권고  【권 고】	경제지원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7	2022. 8.31.	구청 민원처리 불만 및 공무원 불친절	○ 구청 보건소, 건축과, 어르신장애인과 등 직원이 불친절하고 책임 회피성 민원처리에 불만	○ 해당 민원을 청렴감사실에 통보하고, 각 부서별로 조치토록 함. 【시 정】	보건소 건축과 어르신 장애인과
8	2022. 9. 7.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처리 부적정	○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의 안이한 대응 ○ 관리사무소의 독단적 업무처리 사례 - 아파트 내 주차장 과소 설치 - 노인정 면적 과다 산정 - 아파트 감사업체 선정 부적정 - 경비원, 청소원 근무 시간 등	○ 해당 민원을 청렴감사실과 건축과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함 【시 정】	건축과
9	2022.10. 7.	장례식장 허가 반대 다수인 진정민원 관련	○ 2022년 5월 달서구 ◇◇요양병원에서 부대시설로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지역주민은집단반대 ○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위원회에 의견 요청	○ 요양병원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 설립은 법규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함. ○ 그러나 해당 지역에 장례식장이 4개나 있어 추가 허가시 교통정체, 불법주차 등 주민 삶의 질 악화 우려 ○ 구청에서는 우선 주민과 병원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불가 시 공익차원에서 불허가 검토 고려할 것을 권유 【권 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0	2022.11.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약국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현장 확인결과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약국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므로 대책이 필요함 ○ 주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상반기 중 설치 예정. 【권 고】	주차 관리과
11	2022.11. 2.	아파트 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 민원	○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피해로 인근 요양원 및 연립 주택 주민 피해 극심	○ 향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공사장 현장확인 및 소음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위반 시 적정한 행정처분 및 소음 진동 저감대책 조치를 취하도록 함 【권 고】	기후 환경과
12	2022.11.15.	아파트 난방비 관련 자료 제출 요망	○ ◇◇동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과오납분 반납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하였으나 제출 바람	○ 2020년 10월 해당 ◇◇아파트 경로당 보조금 교부시 면적 산정이 잘못 되어 2021년 아파트 난방비가 과다 지급되었음을 인지함 ○ 이후 면적 재산정을 통해 2022년 난방 보조금 교부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이러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정보 제공함 【권 고】	어르신 장애인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3	2022.11.17.	사실상의 도로 불인정(맹지)에 따른 건축 불허가 관련 민원	○ 민원인의 토지로 가는 길은 오랜 기간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로 사용해 왔으나 공부상 타인소유의 토지(지목:대지)이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구청 설명에 이의 제기	○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지속행위이므로 구청의 건축 불허가 안내는 타당함 ○ 이 건은 사인 간의 재산권 문제로 우선 당사자 간의 분쟁 해소를 위한 화해가 우선되어야 함 ○ 민원인에게 상대방과 화해 중용 및 대체도로 매입방안,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안내함 【의견표명】	건축과
14	2022.11.25.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로 개설 요청	○ 민원인(◇◇대책위원장)이 ◇◇동 공공주택지구 앞 농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농로개설 요청	○ 청렴감사실 주관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민원 관련사항 협의 ○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중앙정부사업임을 설명 ○ 농지에 농로 개설 및 보강은 가능하며,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공문으로 민원을 정식 접수하면 적극 검토함을 안내함 【의견표명】	도시 디자인과
15	2022.12. 5.	등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과다 부과는 부당	○ 민원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사업 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음 ○ 과태료 부과 처분시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적용되어 부과액도 많이짐	○ 본인의 착오와 과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며, 기한 내에 미납부 시 법규에서 정한 경감을 적용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시일이 촉박하므로 먼저 종합민원실에 민원 접수하여 관계부서에서 도움 받도록 안내 【의견표명】	건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6	2022.12. 7.	아파트 인접 주택의 빗물 처리 부당	○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접한 주택의 지붕 빗물이 아파트 쪽으로 낙수되어 생활에 불편 호소	○ 제기된 민원사항을 관계 부서에서 확인하여 조속 처리토록 통보함 【시 정】	건축과

##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 ① 불우 어르신 생계지원 요청

#### □ 민원내용

- ▶ 민원인은 고령의 청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오랜기간 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지 못함. 노령생계 곤란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에 부적격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으니 조사해 주기를 바라며, 근로능력이 있고 생계가 곤란한 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를 요청함. 아울러 병원입원에 따른 병원비 지원 및 노후주택 난방시설 등의 수리를 지원해 주기를 요청.

#### □ 사실관계 확인

- ▶ 두 차례 현지 확인결과 거주지가 대체로 누추하고, 방수처리가 불량하여 천정과 벽면 여러곳에 누수현상이 있으며, 신청인은 부부합산 월48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수당과 약간의 폐지 수집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련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품 등을 후원해 왔음을 확인
- ▶ 입원 병원비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비 감액상담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거주 중인 주택의 도시가스 설치에 도시가스 관계자를 통해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비용과다로 설치를 거부.

#### □ 의견표명

- ▶ 민원인이 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현재 고령의 나이와 청각장애 3급의 사회적 약자로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능력에 맞는 노인일자리 마련 검토를 권고한다. 다만 노후 주택의 방수 및 도시가스설치, 의료비 지원 등은 관련법에서 정한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

##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참여경력, 세대형태,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신청자에 비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부족한 상태로 신청당시 채점한 점수 순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음. 다만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 관련법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급여의종류)①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요청

### □ 민원내용

- ▶ 민원인은 달서구○○동 상가건물 1층을 아이스크림판매용 무인점포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개점과 동시에 상점 일부가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었고, 이후 몇 차례 자진철거 안내를 받았으나 무허가 건축물 부분(10㎡정도)을 철거할 경우 상점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 하였음. 다만,

1년의 계도 기간동안 50%감경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경감없이 부과되는 점에 대해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경감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주기를 요청.

#### □ 사실관계 확인

- ▶ 민원인은 실직과 병환에 따른 생계대책으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상가를 임차하고 리모델링 하였음. 계약당시 상가일부 가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하였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 달서구에서는 민원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가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무허가 건축물임을 적발하고, 그 사실을 2021년 6월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처분사 전통지하였으며, 2021년 7월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통지를 시작으로 몇 차례 독촉 및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거쳐 2021년 10월부터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함.

#### □ 의견표명

- ▶ 민원인이 소유자에게 2년 기한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무인점포로 운영하던 당해 건축물이 개점과 동시에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이 종전의 임차인에게는 평온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민원인이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은 충분히 이해됨.
- ▶ 하지만 이는 민원인이 질병과 가족생계를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할 상가 건축물에 대해 관련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민원인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본다.
- ▶ 민원인의 당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요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민원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분할납부(12개월)를 적용해 줄 것을 의견표명함.

####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민원인의 이행강제금 경감은 해당 감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경감은 어려우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지침」제6조제2항(분할납부)에 의거 분할납부 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①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지침」

제4조(이행강제금 등의 부과)①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6조(분할납부)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의 분할 고지를 구두 및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생계 곤란자인 경우

②제1항에따른 이행강제금 등의 분할 납부 기한은 최장 12개월로 하며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기한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전통시장 내 노외주차장 일부 폐지 요청

### □ 민원내용

- ▶ 민원인은 ○○시장에서 40여년간 영업해 온 상인으로 현재 상인회에서 운영중인 노외주차장(19면) 구역을 시장 상인들의 화물 상하차 구역으로 평온하게 사용하여 왔으나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화물 상하차 구역에 19면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영업공간 협소 및 주차시 소음 등의 문제로 상가운영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노외주차장중 민원인의 상가 포함 5개 상가 앞의 노외주차장 9면의 철거를 요청함.

### □ 사실관계 확인

- ▶ 민원 신청한 해당구역은 민원인의 상가를 포함한 5개 상가(음식점)가 연이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상가 앞쪽의 유휴 공간에 2차 시설현대화사업 기간 중 달서시장 상인회에서 소규모 노외 주차장 19면을 설치하였고, 그 가운데

9개 주차면이 민원인의 상가 앞에 근접 설치되어 있어 차량 매연과 야외 공간 협소로 옥외 영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상인회에서는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이 구역을 방문고객의 편의를 위해 법규에 맞게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닌 설치자의 신고사항임을 주장하였고, 민원인이 그동안 시장 내의 다른 구역과 비교해 오랫동안 해당구역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
- ▶ 다만 상인회에서는 그동안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신청인의 고충과 항의를 청취하였고, 달서구청(경제지원과)에서는 일렬주차, 경차주차 등 여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민원인은 주차선의 전면 철거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음.

#### □ 의견표명

- ▶ 민원인이 평온하게 사용하여 왔던 상가 유희공간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고충 및 영업피해 주장은 충분히 수긍되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종료 시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 민원인도 상인 대표로 포함시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 또한 인정된다.
- ▶ 다만,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상인회에서 설치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비록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이 구역을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신청인 포함 5개 상가의 고충과 영업피해 발생도 심히 우려되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상인회 모두 생활 공동체임을 인식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보임.
- ▶ 이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인 상가 앞 9면의 주차면을 직각 주차 방식에서 상가에게 원거리쪽으로 4~5면 정도의 일렬 주차방식으로 재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련 사항은 신청인과 상인회가 서로 협의토록 권고함.

####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3회에 걸쳐 시장상인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로 주차선은 점포 안으로 매연이 많이 들어와 영업에 지장을 주며, 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로 주차선으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고, 의견 조율

- ▶ 상인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 포함 상가(5개 점포)와 협의를 하였으나 제시된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상가앞 주차면 전면 철거를 고수하며 5개 상가 모두 동의 서명을 거부. 추후 경제지원과에서 시장 상인회와 민원인 포함 5개상가의 재협의 예정.

#### □ 관련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시장관리자)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지원대상사업)①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 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4 장례식장 허가반대 다수인 진정민원 관련

#### □ 민원내용

- ▶ 민원 제기된 지역은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이미 4개소의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병원 설립당시 장례식장 설치는 없으므로 하여 허가 신청하였고, 장례식장 설치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주민들이 잠잠한 틈을 이용하여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장례식장 설치 반대를 요지로 다수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문을 요청.

#### □ 사실관계 검토

- ▶ 해당 장례식장 허가는 「의료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요양병원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 설립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함. 다만, 장례식장이 허가되어 신규 설립될 경우 인근에 기설치 되어 있는 4개의 장례식장을 포함 5개가 존치하게 되어 교통정체 유발, 주택지 주차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 열악한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불허가 처분이 지역주민의 복리 및 공익에 우선하며, 당초 병원 측에서 장례식장 설치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구두약속을 기만한 절차상의 잘못과 도의적인 책임을 위배하였으나 불허가 처분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불허가시 병원 측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여지가 있음.

## □ 의견표명

- ▶ 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춘 신고이기는 하나 해당병원 인근의 생활권역에 이미 장례식장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근주민들의 교통, 주차문제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과 병원 양측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갈등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임.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 구민권익구제를 위한 선제적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익 보호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 처리결과(부서조치 내역)

- ▶ 병원인근 주민들의 공익을 우선시하여 병원 측의 장례식장 허가신청은 반려하였으며,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병원 측에서 현재 보건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허가처분 허가·불허가를 결정할 예정임.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4.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 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 □ 민원내용

- ▶ 민원인이 민원제기한 지역은 ○○병원인근 약국 앞이며, 이곳은 병원처방전을 지참한 차량 운전자들이 수시로 불법 주·정차 후 약국을 방문함에 따라 교통정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전10시~12시30분, 오후2시~4시30분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부서에서 민원제기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민원제기함.

### □ 사실관계 확인

- ▶ 민원 제기한 지역 약국 앞 도로는 민원인 주장과 같이 처방전 지참 차량운전자들이 편의상 불법 주·정차하면서 약국을 방문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달서구청에서도 인근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임을 미리 인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음.
- ▶ 한편 인근지역은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후문 부근은 교통 혼잡지역으로 약국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등이 연쇄적인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 □ 의견표명

- ▶ 이에 따라 달서구청에서는 이 지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내문이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사전 계도와 함께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할 것을 의견 표명함.

##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현장인근에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설치 및 현장 단속반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는 2023년도 상반기에 예산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주차관리과)

##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도 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곳.

-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6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민원

### □ 민원내용

- ▶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음. 특히 이 아파트 공사장은 바닥 면적이 좁은 고층건물로써 공사 현장과 민원인을 포함한 거주민들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소음피해가 더욱 심각함. 또한 공사현장 주변에 노인요양센터가 있어 환자들의 요양 및 간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기후환경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향후 공사장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 사실관계 확인

- ▶ 민원제기한 공사현장은 현재 초기 터파기 공사 및 지하건물은 기 완료되었고, 현재는 지상층의 건축이 진행 되고 있음. 공사장에 인접한 곳에 노인요양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요양 및 간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장 30여 미터 이내에 각16세대 규모의 빌라 4개동이 위치하고 있어 역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많아 보임.

### □ 의견표명

- ▶ 공사현장 인근 요양원 및 인근빌라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상당해 보이므로 달서구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확인 및 소음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이에 따른 적합한 행정처분 및 방음시설 설치 등의 소음 저감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민원인과 시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음을 통지한다.

### □ 처리결과(부서조치 내역)

-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통지내역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소음측정을 통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련민원 해소를 위해 업무 추진중.

## □ 관련법령

### ▶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①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 할 것.(이하생략)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 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